

- 2024 회계연도 -  
**세입 · 세출 예산(안) 검토보고**  
 (기획재정국 소관)

2023. 11. 30.

전문위원 정진만

1. 제안이유

- 2023. 11. 7.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일반·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2. 예산규모

(단위 : 천원)

구분	2024년 예산(안)	2023년도 예산	증(△)감	
			금액	비율(%)
세입	481,187,012	477,305,457	3,881,555	0.81
세출	45,929,480	73,678,310	△27,748,830	△37.66

3. 세입현황(부서별 현황)

(단위 : 천원)

구분	2024년 예산(안)	2023년도 예산	증(△)감	
			금액	비율(%)
계	481,187,012	477,305,457	3,881,555	0.81
기획예산과	239,211,431	233,456,272	5,755,159	2.46
재무과	103,714,687	88,718,771	14,995,916	16.9
세무1과	135,534,525	152,403,472	△16,868,947	△11.07
세무2과	2,593,140	2,568,424	24,716	0.96
부동산정보과	133,229	158,518	△25,289	△15.95

## □ 세입 검토의견

- 기획재정국 세입예산은, 금년대비 0.81%(38억8,155만원) 증가한 4,811억 8,70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,
  
- 기획예산과는 금년대비 2.46%(57억5,515만원) 증가한 2,392억1,143만원으로, 주요내용은
  -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단 전산시스템 사용료 수입 및 기타 이자 수입으로 272만원 증액된 4억2,000만원,
  - 임시적세외수입으로 BC성북구청카드 적립기금 등 8,000만원,
  -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로 △54억1,400만원이 감액된 169억2,700만원,
  - 자치구조정교부금 중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전년도와 같은 2,106억1,800만원,
  - 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) 예탁금 회수 111억6,643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음.
  
- 재무과는 금년대비 16.9%(149억9,591만원) 증액된 1,037억1,468만원으로, 주요내용은
  -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1억2,060만원, 증지수입 6억8,868만원, 공공예금 이자수입 39억4,500만원,
  - 임시적세외수입인 재산매각 수입으로 31억7,796만원이 증액된 118억 2,833만원,
  - 구금고 협력사업비로 9억9,000만원이 증액된 20억원,

- 공유재산 변상금으로 △1,358만원이 감액된 1억3,206만원,
- 순세계잉여금으로 100억원이 증액된 850억원 등임.

○ 세무1과는 금년대비 △11.07%(168억6,894만원) 감액된 1,355억3,452원으로, 주요내용은

- 지방세수입(등록면허세, 재산세, 지방소비세)로 181억9,297만원 감액된 1,180억5,934만원,
- 세외수입으로 시세징수교부금 수입 14억3,531만원 증액된 162억6,012만원, 지난년도수입은 △1억1,439만원 감액된 27억9,630만원,
- 자치구조정교부금등 재정보전금으로 578만원 증액된 11억3,898만원,
- 주택가격 조사결정 국고보조금 7,607만원 등임.

○ 세무2과는 금년대비 0.96%(2,471만원) 증액된 25억9,314만원으로, 주요내용은

- 지방세수입으로 등록면허세 959만원 증액된 19억4,247만원, 지난년도 수입 694만원 증액된 6억2,021만원,
- 임시적세외수입인 기타수입으로 818만원 증액된 3,044만원 등임.

○ 부동산정보과는 금년대비 △15.95(2,528만원) 감액된 1억3,322만원으로, 주요내용은

-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종암동 지구(조정금) 분할 납부금 2,000만원,
-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으로 △2,000만원 감액된 1,000만원,

- 「공인중개사업」 위반 과태료 등 과태료로 200만원 증액된 2,450만원,
- 개발부담금 5,000만원과 국고보조금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비 2,459만원이 신설되었음.

■ 세출현황

□ 부서별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4년 예산(안)	2023년도 예산	증(△)감	
			금 액	비율(%)
계	45,929,480	73,678,310	△27,748,830	△37.66
기 획 예 산 과	43,666,266	71,378,560	△27,712,294	△38.82
재 무 과	584,768	604,613	△19,845	△3.39
세 무 1 과	689,067	746,693	△57,626	△7.72
세 무 2 과	572,649	578,507	△5,858	△1.01
부 동 산 정 보 과	416,730	369,937	46,793	12.64

□ 세출 검토의견

○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, 금년대비 △37.66%(277억4,883만원) 감액된 459억2,94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,

○ 기획예산과는 금년대비 △38.82%(277억1,229만원) 감액된 436억6,626만원으로,

■ 주요 신규사업으로는

- 지자체 기능분류모델 시스템 고도화 분담금 525만원,
- 공공시설 관리 플랫폼 구축 8,000만원
-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416만원,

- 종암동 기록관 사무집기 및 운영장비 구입 1,793만원
- 자산취득비로 디지털 복합기 665만원 등임

■ 주요 증액사업으로는

-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위탁으로 6,932만원 증액된 155억6,525만원,
- 성북문화재단 경영사업위탁으로 12억9,715만원 증액된 153억6,787만원,
-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6,206만원 증액된 1억2,711만원,
- 예비비로 4억2,294만원 증액된 99억5,000만원 등임.

■ 주요 감액사업으로는,

- 과제관리 체계구축이 전년도 3억9,006만원에서 1억3,531만원으로 △2억5,475만원 감액된 것은 지난해 편성되었던 성과관리시스템 구축(2억6,000만원)이 2024년에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임.
- 사회조사 및 공공데이터 플랫폼 운영이 전년도 1억5,310만원에서 5,240만원으로 감액된 것은 연구용역비로 구정인식조사가 1억2,200만원에서 2,200만원으로 △1억원 감액되었기 때문임.
- 직원공통경비 지원으로 직원 기본업무추진급량비가 2억9,060만원에서 △1억4,060만원 감액된 1억5,000만원
- 예비비 △82억8,822만원이 감액된 것은 지난연도의 재해·재난목적예비비(86억796만원)와 내부유보금(1억320만원)이 2024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임.
- 행정운영경비 △9,515만원이 감액된 것은 조직개편으로 주민공동체과

가 안전생활국민 일자리정책과와 지역경제과로 개편되었기 때문임.

## ■ 기획예산과 기금

- **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<sup>1)</sup>(1995년 설치)** : 2024년도 말 조성액은 금년대비 5.32%(71억3,800) 감액된 1,271억2,793만원,
- **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<sup>2)</sup>(2020년 설치)** : 2024년도 말 조성액은

1) 제13조(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) ① 구의 공용청사 및 구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공공문화시설, 공공체육시설, 주민편익시설 등(이하 “공공시설”이라 한다)의 건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(이하 이 조에서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 (개정 2020.5.14, 2020.12.31.)
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(개정 2020.5.14.)

1. 일반회계 전입금 (구세 및 세외수입의 1% 이상) (개정 2017.12.28, 2020.5.14, 2020.12.31.)
2. 교부금 및 보조금 (개정 2020.5.14.)
3. 삭제 (2017.12.28.)
4. 기금운용 수익금 (개정 2020.5.14.)
5. 그 밖의 수입금 (개정 2020.5.14.)

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(개정 2020.5.14.)

1.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(신·증·개축, 재건축 포함) 경비 (개정 2020.5.14.)
2.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관련 부대경비 (개정 2020.5.14.)
3.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(신설 2020.5.14.)
4.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등 (신설 2020.5.14.)
5. 기금 운용·관리를 위한 경비 (신설 2020.5.14.)

## 2) 제2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

제7조(설치 및 운용) 구청장은 **기본법 제16조**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·기금 운용 상 여유자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통합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 [전문개정 2020.12.31.]

제8조(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탁 받는 자금(이하 “예수금”이라 한다)
2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
3. 통합 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
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

1.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
2.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

금년대비 22.53%(96억3,265만원) 감액된 331억1,563만원,

-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<sup>3)</sup>(2020년 설치) : 2024년도 말 조

3. 통합기금 운용·관리에 필요한 경비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**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·운용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·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통합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(이하 이 조에서 “예수금”이라 한다)
2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
3.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
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
2.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
3. 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경비

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.

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른 회계로의 진출
2. 지방채 원리금 상환

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,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20. 6. 9.]

**3) 제9조(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)**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한다. 다만,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, 그 초과분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2.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, 그 초과분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3. 재정안정화 계정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
4.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

성액은 금년대비 3.99%(15억5,890만원) 증액된 389억9,876만원임.

○ 재무과는 금년대비  $\Delta$ 3.39%(1,984만원) 감액된 5억8,476원으로,

■ 신규 사업은 없으며

■ 주요 증액사업으로는

- 회계관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로 404만원 증액된 8,265만원이며,

■ 주요 감액사업으로는

-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재산관리에서  $\Delta$ 2,532만원이 감액된 것은 정비구역 감정평가수수료가 전년도 2,821만원에서 289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임.

○ 세무1과는 금년대비  $\Delta$ 7.72%(5,762만원) 감액된 6억8,906만원으로,

■ 크게 증액되거나 신규 사업은 없으며,

■ 주요 감액 사업으로

- 지방세 부과징수 일반운영비로  $\Delta$ 5,282만원이 감액된 것은, 공공운영비 등기우편이 2억1,252만원에서 1억6,698만원으로  $\Delta$ 4,554만원이 감액

---

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한다.

1. 서울특별시 성북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세입 중 지방세, 세외수입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 충당
2.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,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3.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,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
4. 통합기금 운용·관리에 필요한 경비

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1. 해당 회계연도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금 총액이 50억원 이하일 때
2. 해당 회계연도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

편성되었기 때문임.

○ 세무2과는 금년대비  $\Delta 1.01\%$ ( $\Delta 585$ 만원) 감액된 5억7,264만원으로,

- 신규 사업으로는 전자복사기 구매 450만원,
- 주요 증액사업은 없으며,
- 주요 감액사업으로는
  - 지방세 부과징수로  $\Delta 581$ 만원 감액된 2억7,797만원과 체납지방세 징수 활동 강화 414만원 감액된 2억5,325만원임.

○ 부동산정보과는 금년대비 12.64%(4,679만원) 증액된 4억1,673만원으로,

- 신규 사업으로 스마트KAIS 단말기 구매 260만원(2대)이며,
- 주요 증액사업으로는
  - 지적정보화 일반운영비 1,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세계측지계 변환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이며,
  -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·공시 예산 2,504만원이 증액된 것은 사무관리비 중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(국40%, 구60%)가 전년도 3,512만원에서 5,832만원으로 2,3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임.
  - 도로명주소 사업 4,265만원 증액된 2억5,038만원으로 이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3,700만원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임.
- 주요 감액사업으로는
  -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서  $\Delta 3,096$ 만원이 감액된 것은 지난연도에 편성되었던 1인가구 전·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운영 예산이

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임.

- 실생활 주소체계 구축 중 시설비 및 부대비 △1,856만원이 감액된 것은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사물주소판 설치가 이번엔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임.

-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이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<sup>4)</sup>와 지방재정법 제36조, 제3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부합되고 지방재정법 예산편성 지침 등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음.

- 
- 4)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(예산의 편성 및 의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·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시·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의 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.
  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.
  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.